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목적 >

1.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중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또한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계약기간 >

2. 계약 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제14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제공자 (을)와 서비스이용자(갑), 보호자(병)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 ①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②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급여를 제공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 ③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④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⑤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
- ⑥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⑦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⑧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2) 입소자의 권리

-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을 권리,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짐
- ③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 ⑤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긍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3)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 ① 신원 인수인은 입소자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등을 포함한 원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③ 인적 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 ⑤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등의 오손, 파손에 관한 원상 회복 의무

< 계약해제 및 퇴소 >

제 18조 (입소자의 계약 해제에 관한 사항)

-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9조 (퇴소)

노인 장기요양 법에 의거 수용 할 수 있는 인원을 기준으로 보호하고,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퇴소 대상자를 결정하며 이 경우에는 퇴소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보장 한다.(입소 시 이용자의 서약서에 충분히 숙지하도록 설명한다.)

< 이용료 및 그 밖의비용 부담액 >

제15조 (이용료)

-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을 시행한다.
-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16조 (기타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 : 특별 서비스 제공 시)

- ① 서비스 제공시 실비를 요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신원인수인 또는 보호자와 협의 후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이용자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건강검진 비용 등 센터 이용 시 발생하는 치료비와 약제비를 청구할 수 있다. (별첨7)
- ③ 비급여비용 (별첨7)으로 하며, 당해연도 물가에 따라 비급여비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시설장이 결정한다.

*별첨

2026년 재가급여비용

재가급여의 본인부담금 또는 월 이용료는 당해년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가결정에 따른 총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은 일반 15%, 경감 9%, 6%,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주간보호센터

* 등급별 본인부담금 비용

등급	급여수가(1일)	월 급여비용 (20일기준/일반15%)	월 급여비용 (20일기준/경감9%)	월 급여비용 (20일기준/경감6%)	기초생활 수급자
1	69,730원	209,200원	125,514원	83,676원	무료
2	64,590원	197,770원	116,262원	77,508원	
3	59,640원	178,920원	107,352원	71,568원	
4	58,010원	174,030원	104,418원	69,612원	
5	56,360원	169,080원	101,448원	67,632원	
인지지원 등급	56,360원	101,448원 (12일 기준)	60,868원 (12일 기준)	40,579원 (12일 기준)	

* 비급여 항목 및 비용

비급여 항목	산출근거	월 비급여비용(20일기준)
식재료비	1일/ 2식*1회=8,000원	160,000원
간식비	-	-
이.미용비	월2회	없음